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3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.

발 의 자:최은석·박덕흠·김종양

박충권 • 이인선 • 구자근

권성동 · 임이자 · 서지영

유용원 • 박상웅 • 이달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 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.

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,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제1항).

또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비수도 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(안 제71조의2 신 설),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8조의9).

주요내용

- 가.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(안 제58조제1항)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,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,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구간별로 각기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도록하려는 것임.
- 나.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 동산 과세특례 신설(안 제71조의2)
 - 기존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등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.
- 다.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 동산세 과세특례 신설(안 제98조의9)

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10만원"을 각각 "5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10만원"을 "5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10만원"을 각각 "50만원"으로, "5백만원"을 "1천만원"으로, "15"를 "20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50만원 × 110분의 100 + 950만원 × 100분의 2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천만원) × 100분의 15

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1조의2(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 ① 1주택(주택,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1개만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1주택"이라 한다)을 보유한 1세대(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(같은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주택

으로서 주택 소재 지역,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"이라한다)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.

- ②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세대가 2024년 1월 4일 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고,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해당 비수도권 인 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-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,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,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8조의9(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 ①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준공 후 미분양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양도할 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

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.

- 1.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할 것
- 2.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
- 3. 전용면적,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②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1세대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.
-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,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 공제 계산방법,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 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①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- ② 제7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8조의9의 개정규정 중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98조의9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	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
세액공제 등) ① 거주자가	세액공제 등) ①
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	
률」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	
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	
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	
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	
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	
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사업	
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	<u>50만원</u>
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	
따르되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	<u>50만원</u>
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	
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	
손금에 산입한다.	<u>.</u>
1. <u>10만원</u> 이하의 금액을 기부	1. <u>50만원</u>
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	
110분의 100	
2. <u>10만원</u> 초과 <u>5백만원</u> 이하의	2. <u>50만원1천만원</u>
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	<u>50만원</u>
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	
기부금 - <u>10만원</u>) × 100분의	<u>50만원</u>
<u>15</u>	- <u>20</u>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- 3.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50만 원 × 110분의 100 + 950만원 × 100분의 2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천만원) × 100분 의 15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71조의2(비수도권 인구감소지 역 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 ① 1주택(주택, 「소 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1개만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1주택"이라 한다)을 보 유한 1세대(「소득세법」 제88 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 다)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 8년 12월 31일까지 「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(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주택으 로서 주택 소재 지역, 주택 가

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조에서 "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할때 해당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및제4호를 적용한다.

- ②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고,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해당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주택과 해당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-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, 종합부동산세

<신 설>

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,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8조의9(비수도권 준공 후 미 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) ① 「소득세법」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준공 후 미분양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 한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양도 할 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 법」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 한다.

- 1.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에 취득할 것
- 2.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<u>것</u>
- 3. 전용면적, 취득가액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<u>것</u>

- ②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1세대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 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.
-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,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,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